

평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6
------	-----

제출년월일: 1999년 월 일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폐기물관리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 내용을 동조례로 통합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에관한 규정을 신규로 일부조항을 신설하는등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일원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환경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 확대운영 (안제4조,제5조)

나. 행정규제개혁완화를 위하여 일부조항 삭제

-폐기물처리업허가조항 : 폐기물관리법과 중복

-폐기물처리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 폐기물관리법과 중복

-과태료부과에 따른 청문조항 : 상위법에 미근거

다. 쓰레기무단투기신고포상금규정신설(안제11조)

라.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항신설(안제13조내지 안제22조)

마. 폐기물수수료 종량제조항신설(안제23조내지 안제30조)

바.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조항 신설(안제25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별첨(관련법령발췌서 및 관련준칙안)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처승인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필요없음

마. 신구문대비표 : 해당없음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토목·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규칙 별표4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7. “음식물쓰레기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음식물쓰레기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10.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1.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별표1 규정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산·하천·공원·도로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시장·군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강원도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지사가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지정) ① 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은 산간·오지 등으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군수가 고시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관광지등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제6조(폐기물의 수집·운반·배출 및 처리 등) ① 군수는 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26조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지역단위별로 군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그 지역단위별로 처리할 때
2. 쓰레기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자 또는 이사·집수리·정원손질등 일시에 생활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자.

제7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보관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은 재활용가능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1 규정에 의한 종류별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부패성쓰레기는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나 모기 등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설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2. 여객터미널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
3.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사업자
4.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2. 수집·운반이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
3. 뚜껑이 있어야 하며, 그 외의 부분은 전체가 밀폐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4.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생활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재활용가능폐기물·가연성생활폐기물 및 불연성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군의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및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스티로폴 등의 폐기물과 이사·집수리·정원손질등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2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별표1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수 있다.
- ⑥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9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쓰레기무단투기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하여 쓰레기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신고건에 대하여 적정할 경우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제13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영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사료·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를 담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하고 봉투의 종류 및 재질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 전문 중간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사료·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재활용이용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23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공공용봉투 및 관광지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일반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관광지용 봉투에는 관광지·마을관리휴양지 및 산지정화보호구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일반용봉투는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매립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소각용 봉투의 색깔은 옅은 붉은색,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옅은 청색, 관광지용봉투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분괴성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 물성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한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단체표준규격을 준용한다.

제2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평창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평창군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의 기본모형은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군세입 증대를 위하여 광고 등을 삽입할 수 있으며, 군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구나 도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분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하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23조 및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3과 같다.

제25조(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업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관광지용봉투는 마을관리 휴양지등 관광지를 운영하는 운영주체로부터 운영수입으로 읍면사무소에서 구입하여 행락객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제작된 쓰레기봉투를 군수가 정하는 자(금융기관)에게 대행하여 판매소에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대행공급자에게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 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를 지정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 ② 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쓰레기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③ 군수는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또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광고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군수가 결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4조제2항의 광고료 부과기준은 군수가 별도 결정 고시한다.

제2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군수가 대형쓰레기통설치 및 안내판설치,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군수가 정하는 자
2. 제1호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벌 칙

제3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법 제6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2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5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6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

제3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평창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 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쓰레기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대하여는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쓰레기봉투로 본다.

(별표1)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9조3항 관련)

종류	품목	배출요령
1. 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 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금속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고철(비금속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3. 유리병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수병, 기타병 - 농약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닻배공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기타 음료수병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자원재생공사 및 군에서 별도 보상금지급)
4. 플라스틱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 ※ 플라스틱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함 (3,7번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종류	품목	배출요령
5. PET 병류	- PET 병류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6. 페스티로폴	- 페스티로폴	- 이물질 및 부착상표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 비닐봉투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 감량화 지침」(환경부고시 제95-90호 '95. 8.5)에 의하여 제조자들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들에게 직접 배출 ※ 1회용 컵라면용기·도시락 및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PP등)로 코팅된 페스티로폴은 제외
7.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 찌꺼기	- 이물질은 제거하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묻이 고이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 병뚜껑 패각류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제거후 배출

비고.

1. 상기 재활용품목중 음식물류는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지역에 한하여 실시하며, 페스티로폴은 스티로폴 감용기가 설치된 읍.면에 한해 실시함.
2. 상기 재활용품목 외의 추가품목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제9조제5항)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냉 장 고	500ℓ 이상	8,500
	300ℓ 이상	7,000
	200ℓ 이상	6,500
텔 레 비 전	42인치 이상	8,000
	12인치 이상	5,000
세 탁 기	모 든 규 격	5,500
에 어 콘	264m'이상	8,000
	66m'이상	7,000
	66m'미만	5,000
가 스 오븐 렌 지	높이 1m 이상	5,500
	높이 1m 미만	3,000
탈 수 기	모 든 규 격	3,500
공 기 청 정 기	높이 1m 이상	3,500
장 능	120cm장 1쪽	15,000
	90cm장 1쪽	10,000
소 파	대형 6인용	8,000
	소형 4인용	7,000
책 상	양수, 대형	7,000
	편수, 소형	6,000
식 탁	6인용 이상	7,000
	6인용 미만	6,000
피 아 노	어프라이트	11,000
	그 랜 드	15,000
보 일 러 통	대 형	8,000
	중 형	5,000
	소 형	4,000
침 대	2 인 용	8,000
	1 인 용	7,000
기 타 가 전 제 품 및 사 무 용 제 품	대 형	5,000
	중 형	4,000
	소 형	3,600

※ 상기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으로 수수료를 준용

[별표3]

쓰레기봉투의 제작모델(안)

1. 일반용봉투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 이상 함유되어있는 봉투입니다.
평창군문장
쓰레기봉투(20ℓ) -일반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 재활용품종류 : 종이류, 금속류(캔),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PET 병류, 페스 티로폴,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평 창 군 수
<p>연락처:</p> <p>평창읍 330-2601 미탄면 330-2602 방림면 330-2603 대화면 330-2604 봉평면 330-2605 용평면 330-2606 진부면 330-2607 도암면 330-2608</p>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2. 공공용봉투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 이상 함유되어있는 봉투입니다.
평창군문장
쓰레기봉투(20ℓ) -공공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 재활용품종류 : 종이류, 금속류(캔),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PET 병류, 페스 티로폴, 음식물류 이 봉투는 자연정화활동, 주민단체공동 청소 및 공공행사등에서 발생된 폐기물 을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 창 군 수
<p>연락처:</p> <p>평창군 환경복지과 (전화:330-2336)</p>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3. 관광지용봉투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 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평창군문장

쓰레기봉투(20ℓ)
-관광지용-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 재활용품종류 : 종이류, 금속류(캔) 유리병류, 플라스틱, PET 병류, 페스 티로폴, 음식물류
2. 이 봉투는 관광지, 마을관리휴양지, 산지 정화구역등 관광지 쓰레기봉투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평 창 군 수

연락처 :

평창읍 330-2601	미탄면 330-2602
방림면 330-2603	대화면 330-2604
봉평면 330-2605	용평면 330-2606
진부면 330-2607	도암면 330-2608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4.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 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평창군문장

쓰레기봉투(20ℓ)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1.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음식물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2.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평 창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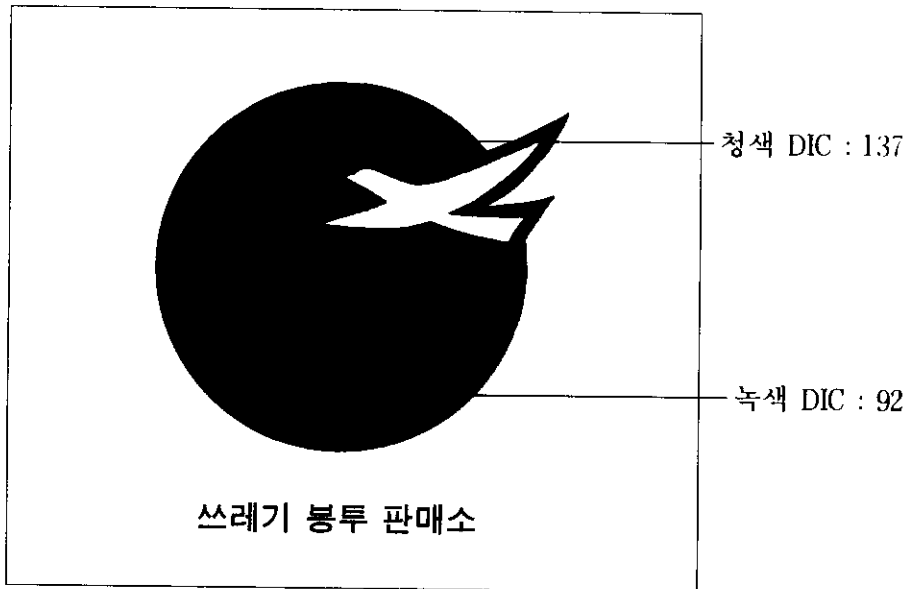
연락처 :

평창읍 330-2601	미탄면 330-2602
방림면 330-2603	대화면 330-2604
봉평면 330-2605	용평면 330-2606
진부면 330-2607	도암면 330-2608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4]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제29조 관련)



- 비고 : 1. 위치는 표시의 하단점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워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지름 1/10을 초과 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317), 녹색(DIC : 92)으로 2도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5】

과태료부과기준(법 제63조3항, 조례 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	5	5
나. 간이보관기구(비닐 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 이상 20 이하	10 이상 20 이하	10 이상 20 이하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이상 20 이하	10 이상 20 이하	10 이상 20 이하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 이상 50 이하	20 이상 50 이하	20 이상 50 이하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50 이상 10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2.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제7조제3항)	30 이하	70	100
3. 생활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분리·보관 하거나 배출하는 경우(조례 제7조, 조례 제9조)	10	20	30
4.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를 부적정하게 배출하는 경우(조례 제16조 위반)	5	10	20
5.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를 부적정하게 처리 또는 배출하는 경우(조례 제17조 위반)	20	50	100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6.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제15조관련)			
가.음식물쓰레기를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한 경우	5	10	20
7.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황활폐기물배출장에 해당하는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 (법제12조관련)			
가.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나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8.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제12조 관련)	100	300	500

< 별지 제1호서식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처리기한 즉시	
신 고 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구분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내유도점포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쓰레기 배출예상량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 량 처 리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 일 자	처 리 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kg/일	kg/일			
자가재활용 계 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 계 획	위 탁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위탁업소명		업 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kg/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처리구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주소(전화)		
자가감량	kg/월							
자기재활용	kg/월							
위탁재활용	kg/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별지 제2호 서식)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감량			재활용			
		자가감량화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누계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자	누 계

(작성요령)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탈수·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료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사실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평 창 군 수

(별지 제5호 서식)

가.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나.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한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평 창 군 수

다. 수납은행 보관용

과태료납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세입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라. 개인통지용

과태료 납부 영수증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취급자인

마. 평창군청 통보용

과태료 납부 영수증

발행번호	계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 무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 금액		⑦ 당초 납부일자	
<p>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평 창 군 수</p>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① 고지금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평 창 군 수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수 신 :		보 남 : 평창군수(인)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상기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 이의 제 기 자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 금액	
	⑤ 부과기관		⑦ 이의제기일자	
붙임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10호 서식)

과태료수납부

① 일련번호	② 통지서 번호	③ 과태료 처분통지일	④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⑦ 액 금	납부의무자		⑩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⑤ 당 초	⑥ 독 촉		⑧ 성 명	⑨ 주 소		⑪ 이의제기일	⑫ 법원통보일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폐기물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의 책무)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①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제60조제1호 및 제61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5조의7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한내에 폐기물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3.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
4.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6.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7. 제43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
2.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3.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 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삭제('99.2.8)
4.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시위탁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
6. 삭제('99.2.8)
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9.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0.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도서지역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환경은 우리생명 보호는 우리사명"

강 원 도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 전화(0361)249-3515 / 전송249-4035
환경정책과장 : 심영섭 담당사무관 : 홍형삼 담당자 : 최연선


문서번호 환경 67511-341

시행일자 1999. 11. 27.

경유 (공 개)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폐기물담당과장

선람	과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번호	결재	심영섭	
처리과		공람		
담당자		람		
심사자		심사일		

제목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 개정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99.8.9)에 따라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을 개정하여 불임과 같이 송부하였기 통보하니 귀 시·군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5.30까지 각 자치단체별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개정조례를 도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음식물쓰레기는 농·축산가 등에서 자원화 되고 있으나, 주변지역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관할 행정구역내 민간자원화시설 또는 농·축산가로 반입될 경우 신고서·반려등 비협조로 자원화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바, 관할 지자체에서는 농·축산가의 경쟁력 확보 및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 재활용을 위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평가계획서 1부. 끝.

강 원 도 지

전결 환경정책과장 심영섭



수신처 : 더 (1-18)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하여야 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하여야 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 시행당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1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예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상
폐기물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쓰레기를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5	10	20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 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 대장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2조 관련)	100	300	500

< 별지 제1호서식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처리기한
							즉시
신 고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쓰레기 배출예상량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 량 처 리				부산물 처 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 일 자	처 리 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 리 자
		kg/일		kg/일	kg/월		
자가재활용 계 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 계 획	위 탁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위탁업소명	업 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kg/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							
상 호		대 표 자		사업장 주소	(전화 :)		
처 리 구 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주소(전화)	
자 가 감 량	kg/월						
자 가 재 활 용	kg/월						
위탁재활용	kg/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 월 일	발 생 량	자가감량			재활용			
		자가감 량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 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처 리 실 적							
자가처리	감량처리	처리시설 능 력 (kg / 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처리			
				부산물발생량	처 리 방 법	처 리 자	
재 활 용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재활용법	위 탁 량	재활용방법	업 체 명	업 종	주소전화
위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제 출 자 : (서명 또는 날인) </div> <div style="margin-top: 20px; text-align: center;">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div>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 제정

1992. 12.

환 경 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안) 제정

I. 목적

-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등에 관한 기준등을 조례로 제·개정토록 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II. 필요성

- '97. 7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관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을 시달하였으나 자치단체별 조례 제·개정등의 후속조치 미흡
-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경우, 이물질 혼입 및 봉투재분리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어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방법을 도입하여 재활용촉진 필요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한 배출방법을 조례로 규정하여 감량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법적용의 형평성 유지
-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정하고,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배출자는 재활용자와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재활용 확대

Ⅲ. 기본원칙

-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 도입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1일 300kg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사용시 봉투판매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함.
-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토록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화기기·시설을 설치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함.

Ⅳ. 세부 지침개정 방향

1.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관한 사항

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자치단체의 장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토록 함.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1일 300kg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스스로 또는 위탁재활용하거나 자가 감량처리토록 배출방법을 조례로 규정 (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 적용)
-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처리업자중 퇴비화·사료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퇴비·사료 생산업허가를 받은 자, 퇴비·사료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퇴비·사료등으로 재활용
-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고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이행신고, 발생 및 처리 실적보고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제작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투명하게 제작하고 색상은 흰색 또는 노랑색으로 통일하며, 전용봉투의 용량은 5ℓ, 10ℓ, 20ℓ, 30ℓ, 50ℓ를 기준으로 하되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5ℓ미만도 제작가능토록 함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로 제작하고 타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여야 하며, 용량은 120ℓ, 240ℓ를 기준으로 하되 자치단체의 장이 수거체계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함

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우선 실시지역

-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수거용기로 수거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홍보, 수수료 부과 및 관리 용이성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공동주택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함

2.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관한 사항

가.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을 위하여 전용봉투사용시 공동보관 시설을 설치하고, 전용봉투 미사용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되 기계식상차가 가능토록 규격등을 정하도록 함
-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토록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함

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재활용 수수료의 부과징수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전용봉투 사용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월간배출량에 따라 정하도록 함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격과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수료 산정은 일반용 봉투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
-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을 총세대수로 배분하여 세대당 일정금액을 산정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하도록 함

3.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

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확대

- 자치단체의 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처리를 대행 가능토록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와 수요자 연계·알선을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및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재활용자(퇴비화·사료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퇴비·사료 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퇴비·사료 재생이용 농·축산가등)에게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함
- 자치단체와 대행계약을 맺은 폐기물처리업체이외의 자도 수거·운반 및 재활용이 가능토록 확대

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 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동 시설에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처리하는 경우 생활 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재활용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4. 기타사항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1일배출량 300kg이하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자에 대한 배출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미이행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적용의 형평성을 유지
- 일정규모(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신축시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를 하도록 하고, 적정 보관시설 및 수거용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치 및 개선 조치명령을 명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용기·배출요령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 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재활용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령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①음식물쓰레기를 담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 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여부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개시 10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 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예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등은 헝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상
폐기물 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쓰레기를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 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5	10	20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 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 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 지 안한 경우	20	50	100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신고서, 연 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 기 관리 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6조제2항 관련)	30	50	100

< 별지 제2호서식 >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년월일	발생량	자 가 감 량			재 활 용			
		자가감 량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작성요령>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감량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 방법은 탈수·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본을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평 창 군

우232-800 강원 평창 평창읍 하린 210-2 / ☎(0374) 330 - 2291 / 전송330 - 2590
 자치행정과(본청2층) 과장 : 이경식 담당 : 노재철 담당자 : 김명기

문서번호 자치05090 - 547

시행일자 1999. 11. 8.

(공개여부 : 공개)

받 음 받는곳 참조
 참 조

선 결 접	과장	김명기	지 시 결 재	
일자	시간	99.11.7		
수 번호		1542		
처 리 과			공 람	노재철
담 당 자			김명기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행정규제 정비대상 목록 통보 및 관련 조례·규칙 개정 촉구

1. 지방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와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2. 그 추진실적이 미흡하여 개정이 필요한 규제정비 목록을 보내드리니 검토후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규제등록서는 관련 서식에 의거 작성 '99. 11. 1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상위법 개정, 법령미근거등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개정작업이 부진한 조례·규칙 목록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니 해당 실과장은 11월말 이전까지 가급적 관련조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 1. 정비가 필요한 규제목록 1부.
 2. 개정대상 조례·규칙 목록 1부. 끝.

평 창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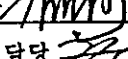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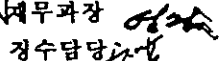

개정대상 조례·규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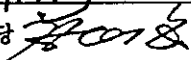
연번	조례·규칙명	사 유	담당실과	비고
1	평창군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상위법 개정으로 폐지	종합민원실	
2	평창군반운영규칙	현실성 결여 조례	자치행정과	
3	평창군세조례	건축물에대한변동사항 발생시 신고의무등	재 무 과	
4	평창군수입증지조례	수입증지판매지정신청 시 인감계제출의무등	재 무 과	
5	평창군폐기물관리조례	폐기물관리법위반자 청문절차등	환경복지과	
6	평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등 (상위법과 중복규제)	환경복지과	
7	평창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	법령미근거 조례 (조례 폐지)	도시경제과	
8	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연대보증인 거주지 제한규정등	도시경제과	
9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법령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등(상위법 개정)	보건의료원	
10	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상위법 개정	농업경영과	
11	평창군사무위임조례(비료판매업신고)	상위법 개정	농업경영과	

연 번	규제사무명 및 규제내용	근거규정	정비의견			사 유	비고
			폐 지	완 화	존 치		
8	소유토지변경사항 에 따른 신고의무	지방세법제234조의21 평창군세조례제79조	○			지적법 규정에 따라 지목변경,면적정정시 신고의무 제외	재무
9	공유재산교환신청 시 신청인 인감증 명서 제출	지방재정법제101조 - 평창군공유재산관리 조례시행규칙제16조				행정기관 내부확인 가능 폐지	재무
10	폐기물 처리업 허가	폐기물관리법제26조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 한조례제12조	○			상위법 중복규제	환경 복지
11	폐기물처리업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폐기물관리법제6조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 한조례제20조	○			상위법령과 중복규제	환경 복지

HAPPY 700 평창 힘있는군민 살기좋은 평창

문서번호	67500-
보존기간	3년
공개여부	비공개
보고일자	'99. 10. .

실무자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
				
+협조	기획실장 정책기획담당  예산담당 	사무과장  정수담당 		

환경시설담당 

- 폐기물조례 · 수수료현실화 · 관리구역정비를 통한 -
생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안

1999. 10. .

평 창 군

**폐기물조례·수수료현실화·관리구역정비를 통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에 관한 관련조례를 일부정비하여 신속히 처리할수 있도록 대처
- 현행 적자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비용의 자립도가 16.5%인바 이를 현실화하여 건전재정운영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 생활폐기물 관리지역과 제외지역으로 이원화된 생활폐기물 처리지역을 폐기물관리 지역으로 일원화하여 환경오염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 실현으로 청정환경을 유지함으로써 HAPPY 700국민의 고향으로 가꾸고자 함.

推進計劃

1. 폐기물 관련 조례 정비 및 통폐합 운영
2. 폐기물·처리 수수료 현실화 추진
3.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확대 운영
4. 종량제봉투 판매제도 개선

細部推進計劃

1. 폐기물 관련 조례 정비 및 통폐합 운영

- ▶ 현행 운영중인 폐기물 관련 조례
 -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 ” 시행규칙
 - 평창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 신규 제정 대상 조례
 - 평창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 조례정비 요인 발생

○종량제 봉투 재질 변경 :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 지침

* 폴리에틸렌 반투명 비닐봉투 ⇒ 생분괴성(AP : 지방족폴리에틸렌)

○쓰레기 무단투기 및 법규위반 행위 신고 포상제 시행근거 규정

○종량제 봉투 판매 방법 개선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근거 명기

▶ 폐기물관련 조례 분산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문 제 점】

-음식물 쓰레기 관련조례 신규제정시 3개의 조례와 1개의 시행규칙 분산관리에 어려움 초래

-관련 법규 개정시 업무량 과중 및 많은 행정력 낭비초래

【대 책】

-각종 폐기물 관련조례를 통합관리

- 평창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 평창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
- 평창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조례
-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평창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로 통합

2.폐기물 처리 수수료 현실화 추진

□ 종량제봉투 기본현황

▶ 폐기물처리 자립도 분석

구 분	98년도	99년도	비 고
세 입	200,672천원	230,000천원	종량제봉투판매수입
청소예산	1,229,000 천원	1,388,208천원	시설비 미포함
자 립 도	16.3 %	16.5 %	

▶ 폐기물처리 자립도 목표

구 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현실화율	16.5%	25% 40%인상	37% 50%인상	50%	70%	85%	100%

▶ 정부권장 봉투수수료 자립도 목표

구 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목 표 치	30%	50%	70%	90%	100%

▶ 종량제봉투 봉투 판매가격 인상요인 분석

-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이 폐기물처리 비용의 16.5%에 불과한 실정임
- 종량제봉투 재질변경 제작단가 인상(99년: 24,000천원 ⇒ 64,000천원)

품 목 별	현행봉투 제작단가	생봉괴성봉투 제 작 단 가	인상율(%)	비 고
5 l	12.5 원	30 원	240 %	
10 l	15.9 원	40 원	251 %	
20 l	25.2 원	58 원	230 %	
50 l	54.7 원	128 원	234 %	
70 l	75.8 원	170 원	224 %	
100 l	98.1 원	226 원	230 %	

□ 폐기물처리수수료현실화계획

▶ 폐기물처리 수수료 현실화 및 종량제봉투 인상계획

구 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현실화율	16.5%	25% 40%인상	37% 50%인상	50%	70%	85%	100%

▶ 종량제봉투단가 인상시기 : 생봉괴성 봉투제작 보급시점(2000년 하반기)

▶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 현행 12,900 원 ⇒ 19,500원(50%인상)

▶ 대형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 세외수입 현실화 계획에 의거 단계별 인상 추진

▶ 99년 종량제 봉투는 기존 보유물량등을 감안 제작유보 : 2000년 제작

□ 조치사항

- ▶ 99년도 종량제봉투 제작유보 : 생봉괴성 봉투 제작(조달단가결정후)
- ▶ 물가대책심의회 개최 : 2000년 상반기중
- ▶ 군의회 의원 간담회 개최 : 2000년 상반기중
- ▶ 종량제봉투가격결정고시 : 2000년 상반기중

3.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정비 추진

□ 일반현황

- ▶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제외지역현황

계			관 리 지 역			제 외 지 역		
읍면	리	인구수	읍면	리	인구수	읍면	리	인구수
8	185	48,746	8	54	25,820	8	131	22,926

- ▶ 종량제봉투판매수입

구 분	계	5 l	10 l	20 l	50 l	70 l	100 l
단 가		64원	121원	232원	553원	828원	1,101원
판매량 (매)	345,630	1,880	53,535	146,179	108,006	7,410	28,620
판매액 (천원)	138,031	120	6,479	33,915	59,728	6,136	31,512

□ 현실태

- ▶ 전체지역중 일부지역만 종량제 시행
 - 95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시가지등 50세대이상 밀집지역만 실시
 - 농촌 쓰레기도 읍면 청소차량 및 재활용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음
- ▶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불합리성
 - 쓰레기 배출방법
 - 관리지역 : 일정수집장소 및 주택앞 배출
 - 제외지역 : 일정수집장소 및 롤온박스 배출

○수집운반 주체

-관리지역 + 제외지역 : 읍면 청소차량 및 재활용차량

-다량배출자 및 일부아파트 : 수집운반 2개업체 또는 업체자체처리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수지불균형 심화

-수입 세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세 출	청소비용자립도	비 고
98년기준	200,672	1,229,000	16.3 %	

-청소비용부담 부적정

- 생활폐기물관리지역 : 종량제 봉투 구입 사용(월 3 ~ 10천원)
- 생활폐기물제외지역 : 무상

□ 문제점

▶ 환경오염의 원인자 부담원칙과 대처

○관리제외지역은 자치단체에서 수집운반하면서 처리비용 미부담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 저조로 재정자립기반 구축에 위배

▶ 지역간 형평성 결여 및 부작용 발생

○관리제외지역 주민 비용부담(종량제봉투구입사용)

○관리지역 일부주민들이 쓰레기를 제외지역이나 톨온박스에 이동 배출 사례속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시 제외지역 쓰레기 처리 지난

○민간위탁업체의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포함 수집운반 가능

※민간위탁시 수집운반량에 의하여 대행비 지급

○민간위탁비용 증가

▶ 효율적인 폐기물 업무추진에 저해

○쓰레기 발생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시책에 역행

○제외지역 주민의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미인식

□ 개선대책

▶ 생활환경 제외지역 폐지 ⇒ 관리지역으로 통일

○ 종량제 시행지역을 군관내 전역으로 확대운영

- 8읍면 185개리 전지역, 단 청소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

- 제외지역 주민들의 일부 불만이 예상되나 지속적인 제도 실시

- 중점계도기간 설정운영 :: 99. 11 ~ 2000. 4. 30(6개월간)

○ 쓰레기 수거 체계의 탄력적운영

- 시가지 기존 종량제 지역 : 매일 수집운반

- 외곽 농촌지역 : 주 1 ~ 2회 수집 운반(마을별 일정 수집장소 지정)

- 재활용품 수집 : 매주 목요일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하여야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지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하는 구역에서 제외할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산간,오지,도서지역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 지정
조항 일부 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
물관리제외지역은 산간, 오지로서 청소차량등의 출입등이 어려워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중 군수가 고시로 정한다.

□ 기대효과

- ▶ 환경오염은 오염자가 그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에 접근
- ▶ 생활폐기물 처리비용부담의 형평성유지
- ▶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을 위한 기반 구축
- ▶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

4. 종량제봉투 판매제도 개선

▶ 현행운영실태

· 군제작 ⇒ 읍·면판매 ⇒ 판매소 ⇒ 주민 구입

- 읍면에서 판매소에 판매하며

· 판매소지정업자 읍·면사무소에 방문 고지서 발부

· 금융기관 대금납부후 면에서 봉투 수령 주민들에게 봉투 판매

▶ 판매체계개선계획(수수료 봉투판매금액의 3%)

- 군제작 ⇒ 금융기관위탁판매 ⇒ 판매소 ⇒ 주민구입체제로개선

- 시행시기 : 생분괴성봉투 제작 공급시(조례개정 병행 추진)

▶ 예상되는 문제점

- 공급대행자 수수료 지출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

- 종량제봉투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여론 발생 우려

- 제작업자와의 결탁으로 불법유통 우려

▶ 대책

- 대행자 선정시 자본, 기술능력등을 확인후 선정

- 제작업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및 제작동판 관리 철저

- 종전봉투와의 구분을 위하여 생분괴성봉투 제작시부터 추진